

대구예술대학교 유휴 기본재산의 관리와 임대에 관한 규정

(제정 2022.01.06. 법인이사회)

제 1 장 총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 교사·교지 및 기타 시설의 임대와 임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.

1. "교사"라 함은 교육기본시설,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, 부속시설을 말한다.
2. "교지"라 함은 교육·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용지를 말한다.
3. "기타 시설"이라 함은 교육기본시설,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, 부속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.
4. "유휴 기본재산"이라 함은 교사 및 교사확보율이 100%를 초과하면서 실제 교육·연구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유휴재산을 말한다.

제3조 (적용범위) 본교의 유휴 기본재산의 임대와 관리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4조 (시설 임대 원칙) ① 모든 시설의 임대 권한은 총장에게 있으며, 주관부서의 관리하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총장은 시설의 임대 및 관리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 또는 부속기관의 장 등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임대 및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, 관리주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③ 모든 시설은 정규 교육·연구·학생활동·행정업무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, 이와 관련 없는 외부 기관이나 개인에게 임대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학교 차원의 필요에 의해 주관부서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대학의 유휴 기본재산으로 지정된 시설은 예외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.

④ 대학의 유휴 기본재산의 지정 및 용도변경은 평의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 2 장 시설 임대 및 관리

제5조 (주관부서) ① 임대의 목적을 위하여 지정한 시설의 주관부서는 총장이 권한을 위임하여 정할 수 있다.

② 주관부서의 장은 임대 계약 및 지정 시설을 관리한다.

제6조 (시설 임대) ① 시설의 임대는 대학에서 유휴 기본재산으로 지정된 시설만 가능하다. 단, 대학 구성원의 복지 등을 위해 기존 사용되고 있는 시설의 임대가 필요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임대할 수 있다.

② 외부기관(단체), 개인이 시설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 및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임차인 및 시설사용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따른다.

제7조 (시설 임대료) ① 시설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주관부서에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면서 책정한다.

② 시설을 임대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책정해야 한다. 단, 학교의 정규 교육, 연구, 학생활동, 행정업무를 위해 해당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정하지 않는다.

③ 시설 임대료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8조 (시설 반납) ① 임차인은 임대자격의 상실, 임대의 중단, 기간의 종료 등 임대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간을 반납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배정받은 시설도 관련 업무가 종료되고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을 경우 지체 없이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.

제9조 (임대 조건) ① 통상적인 시장질서(무상임대, 20년을 초과하는 장기임대,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)에 반하는 임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
② 학원, 교습소,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, 풍속영업, 종교시설 등 사립학교의 공공성 및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임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
제 3 장 기타

제10조 (제재조치) 주관부서는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명령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거쳐 시설배정 제한, 강제퇴거, 예산 조정 등의 행·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1조 (시행세칙)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유휴 기본재산관리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월 7일 부터 시행한다.